



제1591호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3 2 0 호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
- 공 고 제 3 2 4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고 열람 20
- 공 고 제 3 3 3 호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2
- 공 고 제 3 3 6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8
- 공 고 제 3 3 8 호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40
- 공 고 제 3 4 2 호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51
- 보 건 소 공 고 제 1 3 호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64

고 시

- 고 시 제 1 8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65
- 고 시 제 1 9 호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69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320호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9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주소정보 관리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변경 :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 주소정보의 사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안 제2조 ~ 안 제4조)
- 건물번호판 ,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주소정보안내판 광고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안 제7조)
-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안 제9조)
-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토지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토지정보과 (만수동, 남동구청)
- 연락처 : 전화 453-2172, FAX 453-247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FAX 전송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법」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주소정보 관리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안 제1조)
- 주소정보의 사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안 제2조 ~ 안 제4조)
- 건물번호판 ,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주소정보안내판 광고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안 제7조)
-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안 제9조)
-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 안 제11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제6조(기초조사 등), 제1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제24조(사물주소),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동구의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도로명: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남동구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에 주소정보안내판 등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주소정보의 표기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 지원 사업
4. 남동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과 영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남동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남동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비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을 따로 정하여 제작비용을 남동구 홈페이지에 고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정수는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를 따른다.

제6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이외의 경우

제7조(광고사업의 계약 및 지도·감독) ① 구청장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광고사업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 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남동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동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10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

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남동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동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남 동 구

60mm×90mm [백상지 150g/m²]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토
지·건물등·시설물 등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
니다.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호서식]

토지 · 건물등 · 시설물 출입증 발급 대장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m²]

관 계 법 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 '21. 6. 9.] [법률 제17574호, '20. 12. 8,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6. “상세주소”란 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를 말한다.

7. “도로명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8.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

9.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안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10.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1. “주소정보”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2. “주소정보시설”이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제6조(기초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부여·설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로 및 건물등의 위치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실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시·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시·군·자치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3항·제4항, 제13조, 제14조제5항·제6항 및 제15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사물주소)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2. 옥외 대피 시설
 3. 버스 및 택시 정류장
 4. 주차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위치확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물주소판의 제작·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및 절차, 사물주소판의 설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 ⑤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

라 요청받은 주소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⑧ 제4항의 광고에 따른 수입 및 제7항의 주소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⑨ 주소정보기본도,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 ⑩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⑫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건물등·시설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및 임차인은 그 건물등·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는 그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32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고 · 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 도시재생과(☎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0일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499-1번지 일원
- 결정 주요내용
 - 소로2-362호선 신설 : L=258m, B=8m
 -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로 신설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20번지 일원
- 결정 주요내용
 - 소로3-268호선 신설 : L=37.2m, B=3m

- 대중교통이용 편의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86-2번지 일원
- 결정(변경) 주요내용
 - 주차장 결정(변경) : $701.8\text{m}^2 \rightarrow 912.7\text{m}^2$ (증 210.9m^2)
 - 주차효율성 향상을 위한 주차장 정형화 및 확장

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안)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40번지 일원
- 결정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신설 : 483m^2
 - 남촌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재축 및 주민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신설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나. 의견제출 : 입안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제출

3. 열람장소 :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2952)

4.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 도면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갖추어 둠)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 - 333호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 하고, 아동학대 발생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개정 : (안 제8조제1항~제3항)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기존 10명 이내 -> 15명 이내)
 - 아동복지심의 위촉직 위원 전문 분야 추가 (의사, 경찰 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조항 신설 : (안 제8조의2)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아동복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아동복지과/☎ 453-8342, FAX453-2217)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학대 발생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개정 : (안 제8조제1항~제3항)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기존 10명이내 -> 15명 이내)
 - 아동복지심의 위촉직 위원 전문 분야 추가 (의사, 경찰 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조항 신설 : (안 제8조의2)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소위원회)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를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아동위원”을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2회 이내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7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및 부위원장 각”을 “1명과 부위원장”으로, “10명”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과장”을 “담당부서의 장”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로, “학식”을 “관한 학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소위원회) ① 구청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9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위원의”를 “위촉직 위원”으로, “2회 이내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장 총 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필요-----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	-----<삭 제>

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2장 아동위원

<삭 제>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
내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
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8조(구성) ① 남동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
장이 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
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
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
----- 두 차례
만 -----.

-----.

제7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

-- 범위-----
-----.

<삭 제>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 1명과 부위원장 --
----- 15명 -----
-----.

② -----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
----- 담당부서의 장-----

----- 구청장-----
-----.
----- 제6호-----

-----.

1.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
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
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
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
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
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
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
당하였던 사람

<신 설>

<신 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
는 「초·중등교육법」 제2
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
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
-- 관한 학식-----
--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
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
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
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
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
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
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신 설>

4. (생 략)

<신 설>

<신 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 8. (생 략)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의2(소위원회) ① 구청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9조(기능) -----
-----.

1. 「아동복지법」-----

2.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 두 차례만 -----

서 삭제>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
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
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

<삭 제>

<삭 제>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6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삭 제>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2020. 9.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제13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9. 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336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무단전출 수취인 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1.2.10. ~ 2021.2.24.
3. 공고대상 : 32어2871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공 고

연 번	방치내역		소유자		반송 사유
	차량번호	방치장소	성명	주소	
1	32여2871	남동구 만수동 922-13 주차구획선 내	양*경	경기도 안산시 상*구 광**로 **1, **호(*동, 세**운)	폐문 부재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338호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내용 개정 : (안 제4조제1항~제2항)
 - 아동학대 신고 접수 민간에서 지자체로 이관
 - (아동학대 발견 시 남동구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 접수 수행)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아동복지과장)에게 서면

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아동복지과/☎ 453-8342, FAX453-2217)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내용 개정 : (안 제4조제1항~제2항)
 - 아동학대 신고 접수 민간에서 지자체로 이관
(아동학대 발견 시 남동구 또는 수시기관이 신고 접수 수행)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남동구청장은**” 을 “**남동구청장**” 으로, “**한다**)” 를 “**한다)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을 각각 “**남동구**”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회는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를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로, “**위원회의**” 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	<삭 제>

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
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
청장은(이하 “구청장“ 이라 한
다)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
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
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
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
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따른 남동구 아동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
청장----- 한
다)은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

남동구 -----
-----.

②-----

--- 남동구 -----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
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
례」-----
----- 제1항에 따
른 위원회의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
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2020. 4. 7.>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9. 1. 15., 2020. 4. 7.>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 - 342호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남 동 구 청 장**1. 개정이유**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함에 있어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남동구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육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남동구청장 및 상인단체 책무 (안 제3조, 제4조)
- 음식문화거리 지정(안 제6조)
- 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등(안 제7조)
-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및 취소(안 제8조)
- 음식문화거리 사업의 지원(안 제9조)

○ 심의(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식품위생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전송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4층 식품위생과 (만수동, 남동구보건소)
- 연락처: ☎ 453-2621 FAX 453-27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입법예고)

4. 조례제정(안) : 별첨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함에 있어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남동구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육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남동구청장 및 상인단체 책무 (안 제3조, 제4조)
- 음식문화거리 지정(안 제6조)
- 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등(안 제7조)
-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및 취소(안 제8조)
- 음식문화거리 사업의 지원(안 제9조)
- 심의(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와 지역 외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남동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거리”란 일정 지역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써,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상인단체는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하여 남동구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3. 관련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구청장은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준 등) ① 음식문화거리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이 30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를 이루어야하며, 제2조 제2호에 따른 상인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① 상인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제6조에 따른 음식문

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인단체 등록 서류
2. 해당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상인단체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된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②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2.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①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남동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취소
2. 음식문화거리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특색음식거리로 지정된 구월동 문예길음식문화1번가, 운연동추어마을, 소래포구신도로횃집거리, 구월동 로데오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음식

문화거리로 본다.

[별표]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제10조제3항 관련)

☐ 항목별 기준

항 목	심 의 기 준	배 점
음식점 30개소 이상 집단화	·예정지구에 소재한 음식점은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 6점 - 40개소 이상 : 8점 - 50개소 이상 : 10점	10
자치기구 구성 운영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 10점	10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 6점 - 40개소 이상 : 8점 - 50개소 이상 : 10점	10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여부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 이상 동의 : 6점 - 상인의 80% 이상 동의 : 8점 - 상인의 90% 이상 동의 : 10점	10
사업비 자부담 동의여부	·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지구 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 이상 동의 : 6점 - 상인의 80% 이상 동의 : 8점 - 상인의 90% 이상 동의 : 10점	10
우수음식점 비율	·예정지구 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있다. - 예정지구 음식점의 3% 이하 : 6점 - 예정지구 음식점의 5% 이상 : 8점 - 예정지구 음식점의 10% 이상 : 10점	10
거리의 역사성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성 또는 특화된 음식이 있어야 한다.	1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0
	가.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나.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다.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	

비고. -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심의 기준

- 항목별 득점비율은 60% 이상 이어야 한다.(단, 거리의 역사성 항목 제외)
- 심사자의 전체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단체명			

신청사항	음식문화거리명	
	위 치(소재지)	
	예정지구 거리 음식점 수	
	예정지구 거리 상인 수	
	신청 동의한 상인 수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제출서류

1. 고유번호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음식문화거리 지정	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음식문화거리 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남동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사	성명, 생년월일	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위의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음식문화거리 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참고자료】

식품위생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3.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1. 2. 2] [대통령령 제31430호, 2021. 2. 2, 일부개정]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 4. 22., 2014. 7. 28., 2014. 11. 28., 2021. 2. 2.>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13호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명령서를 업소 소재지 및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불명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알림
2. 공고기간 : 2021. 2. 10. ~ 2021. 2. 24.
3.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1981-0199007	구월기름집	최**	구월동 8구월상가 지하2호	-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처 분 일 : 2021. 2. 10.
6.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멸실
7.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8.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032-453-2753)

2021년 2월 10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8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피로 340 (논현동)
- 변경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피로 340 (논현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비고
별 도 열 램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5)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1-9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 340 (논현동)	2009. 7. 6.	함씨와 박씨가 많이 살던 함박마을이라는 마을이름의 함박산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21.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함박외로 340 기초구간에위치하여340을건물 번호로부여	중원 알루텍(주)

남동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 340 (논현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 338 (논현동)	2009. 7. 6.	함씨와 박씨가 많이 살던 함박마을이라는 마을이름의 함박산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21.2.8.	(주)이노플렉스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9호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54호(2010. 9. 6.)로 정비구역이 고시되고, 남동구 고시 제2020-91호(2020. 6. 5.)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남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2번길 18일원(간석동)
 - 나. 면적 : 20,682.9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숙)
 -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99번길 29, 3층(주안동)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1년 2월 10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토지이용계획

(단위 : m²)

합계	공동주택 용지 (상가포함)	정비기반시설			그 밖의 용도
		소계	도로	공원	-
20,682.90	16,512.30	4,170.60	2,321.80	1,848.80	-

2) 건축 연면적 : 66,128.2267m²(지상:41,398.7513m² / 지하:24,729.4754m²)

3) 건축물 규모 : 지하3층~지상25층 아파트 6개동 4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내용(세대수)										상가면적 (m ²)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m ²)	
	계	39형	46형	59A형	59B형	74A형	74B형	84A형	84B형	84C형		-	-
계	469	24	32	118	122	41	60	23	24	25	189.1723	-	-
토지등 소유자	279	-	4	98	36	37	40	20	22	22	47.2931	-	-
보류시설	4	-	3	-	1	-	-	-	-	-	-	-	-
일반분양	162	-	25	20	85	4	20	3	2	3	141.8792	-	-
임 대	24	24	-	-	-	-	-	-	-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단위 : m²)

구분	신설(무상귀속)			폐지 (무상양여 : 1,677.10)	
	계	도로	공원	계	도로
면 적	4,170.60	2,321.80	1,848.80	1,786.10	1,786.10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2021. 05. 03. ~ 2021. 07. 30.

6. 기타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8392)에 비치하고 조합원 등에게 보입니다. 끝.